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y 26,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스위스: 필라 2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고정사업장(PE)의 처리에 관한 지침

스위스 연방 조세청(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은 2025 년 3 월 18 일, 국내 필라 2(Pillar Two) 최저한세 규정의 도입에 따라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으로 분류되는 사업 부문에 대한 처리 기준을 상세히 설명한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지문은 해당 사업체들이 스위스 법률 하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무지침 및 관련된 규정 준수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GloBE 규정 제 1.3.1 조에 따르면,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이란 (a 호) 그룹에 포함된 모든 기업과 (b 호) 그룹에 포함된 본사(Main Entity)의 해외 고정사업장을 의미합니다. GloBE 규정 제 1.3.2 조에 따르면, 제 1.3.1 조 b 호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간주되는 고정사업장은 본사 및 본사의 고정사업장들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는 GloBE 규정 제 10.1 조에 정의에 따르면, 본사의해외 고정사업장만이 구성기업으로 간주되며, 반면에 관련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구성기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GloBE 상 해당 본사에 귀속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추가과세(Top-up Tax) 납부 의무와 여러 절차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최저한세법령(OMinT)의 제 6 조에 따라, 스위스 세법상 동일한 기업 그룹에 속한 모든 구성기업은 OMinT 제 12 조에 따라 귀속되는 추가과세액에 대해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집니다.

현재 스위스 세법상 고정사업장은 순수한 세무상의 개념입니다. 고정사업장은 상업등기부에 지점(branch)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고, 법적 주체성(legal personality)도 없습니다. 즉, 법률상 권리 능력도, 행위 능력도 없으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나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채무 강제집행 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정사업장은 본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연방소득세의 경우, 과세 대상은 고정사업장 자체가 아니라,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으로써 스위스 내에 경제적 연고가 성립된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 고정사업장은 GloBE 규정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간주되며, GloBE 규정 및 OMinT 상 모든 구성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의무 및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국내법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을 고정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고정사업장이 OMinT 및 GloBE 규정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간주되더라도, OMinT 및 GloBE 규정상 과세의무 및 절차적 의무는 고정사업장 자체가 아니라, 고정사업장의 본사에게 귀속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OMinT 제 6 조에 따른 책임 또는 연대책임 역시 해당 본사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889 년 4 월 11 일자 스위스 연방법 '채권강제집행 및 파산법' 제 50 조 제 1 항에 따르면, 스위스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 거주 채무자는 그 고정사업장의 명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해당 고정사업장의 등록지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과세의무, 절차적 의무 및 법적 책임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있다고 해서, GloBE 규정의 기본 개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할지 혼합 원칙(jurisdictional blending), 소득 및 세금의 배분 규칙, 기업의 실체 및 고정사업장의 소재지 결정 규칙 등은 여전히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영국: 이전가격, 고정사업장(PE), 유입이익세(DPT) 관련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영국 세무당국(HM Revenue and Customs, HMRC)은 2025 년 4 월 28 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해외 이익이전 방지세, (Diverted Profits Tax, DPT)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 년 중반 실시된 1 차 의견 수렴에 기반한 것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영국의 국제조세 규정을 간소화하고 최신화하는 한편, 영국이 체결한 소득세 조약상의 의무와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빠르면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가격 규정

- “연결기업(associated enterprises)”의 정의 확대
 - 영국 내 거주법인 간의 특정한 범주의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금융거래에 관한 OECD 원칙과의 정합성 제고
 - 무형자산의 이전 시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른 가치 평가 적용
 - 대출 및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환차익·환손실도 규제 범위에 포함
2. 해외 이익이전 방지세(DPT)
- DPT 를 간소화된 미평가 이전이익 과세 체계로 대체
 - “경제적 실질 부족 요건”을 간소화된 “조세 설계 요건”으로 대체
 - 납세자의 사전 신고 의무 폐지
3. 고정사업장(PE)
- PE 정의를 OECD 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MTC)상의 정의에 보다 가깝게 정비
 - MTC 제 7 조 및 OECD 승인 접근법에 따라 PE 에 귀속되는 이익 산정 (즉, 법인 내 지급된 로열티, 이자, 서비스 마진 등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음)
 - 투자운용자 예외 규정 확대 및 간소화

이번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 년 7 월 7 일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4-법규국조-0250, 2025. 04. 28.

제목: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 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외 석유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카자흐스탄 광구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 해당 광구를 보유한 네덜란드 소재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동 외국법인은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법인세 및 지점세를 납부하고 있음
- 해당 지점의 소득은 외국법인의 당기순이익에는 반영되지만, 네덜란드 세법상 객체면제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됨

2. 질의요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국조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납부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4.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거주지국 세법】

03 관세

대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청 원산지 기획검증 실시

1. 개요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위장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기획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 이번 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2. 원산지 기획검증

1) 의의

- 원산지 검증이란, FTA를 활용한 수출입 물품이 협정상 정해진 요건(예: 원산지 결정기준, 증빙서류 보관의무 등)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로, 위반 시 FTA 특혜 세율 적용이 배제됨

-
- 특히 미국은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통관 서류의 불명확성이나 원산지 위반 정황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이 사후 제재를 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됨

2) 중점 점검 내용

- 미국의 반덤핑관세 대상 품목 및 미국 관세당국이 중점적으로 검증 중인 품목 (예: 섬유, 기계부품, 화학제품 등)에 대해 수출입 이력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원산지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임
 - ① 원상태 제품의 우회 수출
 - ② 역외산 부품의 단순 가공(절단, 조립 등)
 - ③ FTA 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

3) 수출기업 지원 및 위반 시 조치

- FTA 규정이 복잡하거나 원산지 판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며, 주요 협정국의 검증 동향 및 법령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임
- 반면, 역외산 물품에 대해 부적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임

3. 시사점

-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FTA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FTA 특혜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 점검 및 내부 원산지 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적임
-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